

★ ◎

더불어사는 화살기린리안 성동

문서번호	주거정비과-2154
결재일자	2016.2.24.
공개여부	부분공개(5,6)
방침번호	

주무관	재개발2팀장	주거정비과장	도시관리국장	
김지연	이경도	소순면	02/24 윤호중	
협조				

# 2016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

---

2016. 2.



성 동 구

# 2016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

2016년 해빙기에 발생하는 균열 및 붕괴 등으로 인한 민간소유시설(재개발·재건축 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)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 □ 추진배경

### ○ 근거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5조의2(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)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7조(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)
-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분야 추진지침(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-62, 2016. 1.73)

### ○ 추진방향

- 민간소유시설(주택, 재난위험시설)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 중점점검 실시
- 재개발·재건축공사장에 대하여 현장별 자체점검 실시
- 2016년 해빙기 안전관리는 국가안전대진단 한분야로 포함시켜 추진

## □ 점검개요

### ○ 점검기간

- 점검기간: 2016. 2. 29.(월) ~ 3. 9.(수)
- 정비기간: 2016. 3. 10.(목) ~ 3. 16.(수)

### ○ 점검대상

- 재개발·재건축 구역내 노후시설물 20개소(중점관리시설 17개소, 재난위험시설 3개소)
- 재개발·재건축 공사장 10개소(재개발공사장 7개소, 재건축공사장 3개소)

○ 점검반: 담당공무원, 외부 전문가 등

시설명	계	공 무 원		외부전문가	비고
		점검반장	반원		
재난위험 시설물	3명	1명 (시설물담당팀장)	1명 (시설물담당자)	1명 (재난안전전문가)	
건축공사장	2~3명	1명 (시설물담당팀장)	1명 (시설물담당자)	서울시점검시 현장별 별도 점검 진행	

○ 점검방법

- 시설별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시설물의 상태 평가(점검결과에 따라 관리등급 조정)
- 건축물의 종전상태(균열, 기울기, 침하)와 현재 상태 비교점검 실시
- 손상, 결함 부위의 진행 상태 점검 실시
- 주 구조부재 기능유지 점검 실시
- 축대 및 사면 부등침하 및 균열 점검 실시

□ 조치계획

○ 점검결과 이상 징후 발견시

- 재난발생 위험이 높아 보수·보강 등의 안전조치가 긴급한 경우 즉시 안전조치 지시
- 정밀 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보수·보강 실시토록 지시

○ 안전 취약시설 재해 우려 경우

-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관리
- 시설물별 점검책임자 지정, 관리카드 및 점검일지 작성
- 정비완료시까지 지속적인 관리

□ 행정사항

-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주체(시공사, 소유주)에게 정비기간(2016.3.10.~3.16.)중에 자진 정비하고 통보하도록 안내

-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(D, E급) 확인 시에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여 관리
-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수·보강 등 위험요소 해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 결과를 담당자별 성동구재난관리시스템(LDMS)에 결과 입력 및 관리

붙임: 1. 2016년 해빙기 안전관리 대상. 1부.  
2.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1부. 끝.